SECTION 1

예산절감, 그 출발선에서

1. 추진배경
2. 예산절감 개념
3. 예산절감 기본원칙
4. 예산절감 중점 착안사항
5. 예산집행상 절감 인정범위
6. 예산편성상 절감 인정범위
7. 절감재원의 재투자
8. 예산절감 평가 및 인센티브



1. 추진배경

- 새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 창의와 실용에 바탕을 두고 각종 규제 완화, 경제살리기, 대국민서비스 수준 향상을 적극적으로 추진

- 특히, 공공부문에 있어서 한정된 재원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강조되고 있음

- 이에 따라 기존의 대국민 서비스 수준은 유지하면서 공공부문 전반의 군살을 제거하여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조기에 구현 하고자 범국가적 차원에서 예산절감을 추진

- 예산절감을 통해 확보된 추가 재원은 경제살리기, 서민생활 안정, 물가 및 에너지 대책, 국정과제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으로 적극 활용

- 예산절감은 단순히 절감만이 아니라 관례답습적인 예산사용 관행과 공무원의 행태 · 마인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국민세금을 알뜰하게 쓰는 절감시스템 정착을 함께 추진

- 또한, 민간경영기법 도입, 원가의식 제고, 인센티브체계 구축 등을 통해 공공부문 전반에 창의와 혁신을 촉발 유도

2. 예산절감 개념

- 예산의 편성 · 집행 · 사후관리 등 재정운용 전반에 걸쳐서
  - 각종 낭비요소나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하고, 지방세 · 세외수입 등 수입을 확충

- 예산절감은 재정지출 총액 자체를 단순히 축소하는「긴축재정」의 의미가 아님

- 예산절감을 통해 확보된 재원은 경제살리기, 서민생활 안정, 일자리 창출, 물가 및 에너지대책, 지역현안사업 등 주민이 꼭 필요로 하는 부분에 재투자

- 일회성에 그치는 예산절감이 아니라 항구적인 절감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과 시스템 구축, 공무원 행태 · 마인드 전환을 목표로 추진



3. 예산절감 기본원칙

-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기준 · 목표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,
  - 각 자치단체별로 지역적 특성과 재정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목표와 실행계획 수립

- 통상적 · 점증적 방법에 의한 기존의 예산절감이 아니라,
  - 구조적 틀과 시스템을 바꾸는 수준으로 예산을 원점(Zero-base)에서 재검토하고, 행태 · 제도적 변화와 원가 · 비용 마인드 정착

- 중앙 및 상위 자치단체가 예산절감을 지시 ·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,
  - 중앙-자치단체, 자치단체 상호간 지속적 의사소통과 협력 추진

- 단순히, 예산절감 목표 달성에만 초점을 두어 사업을 연기하거나 물량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,
  - 예산절감 계획 · 추진 · 평가 등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서 모든 자치단체가 공유 · 벤치마킹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례와 제도 · 시스템 변화를 도출하는데 초점

4. 예산절감 중점 착안사항

- 중앙부처-자치단체간, 자치단체와 특별행정기관간, 시 · 도와 시 · 군 · 구간, 자치단체내 부서간 업무협조 미흡으로 인한 낭비
- 계약관련 전문성 부족으로 입찰과정에서 계약방법 · 조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항목을 원가에 포함시켜 높은 가격으로 계약함에 따른 낭비
-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화시스템이나 시설 · 물품이 있는데도 중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낭비
- 지역적 특색이 없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지역축제 난립으로 인한 낭비
- 동일 · 유사한 연구용역 혹은 실제 업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연구용역으로 인한 낭비
-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나 이용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청사 · 문화 · 체육시설의 경쟁적 건립에 따른 낭비
- 마을 · 주민회관, 체육관 · 운동시설 등 중복투자로 인한 낭비
- 민간이전경비의 방만한 예산편성 및 집행 · 사후관리 미흡에 따른 낭비
- 관행적으로 전년도 대비 증액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후, 당초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함에 따른 낭비
- 운용 실적이 부진하거나 유사 · 중복적인 특별회계 · 기금의 난립 · 과다조성,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용 미흡에 따른 낭비

5. 예산집행상 절감 인정범위

(1) 공통사항

- 예산절감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자치단체의 일반회계,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함
  -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, 공기업특별회계를 모두 포함

- 기금, 공사 · 공단, 출연 · 출자기관 등은 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추진하되,
  - 예산절감 실적을 소관 자치단체의 실적으로 포함

- 불용된 예산 혹은 초과 징수된 세입 등 세계잉여금을 예산절감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
  - 각 사례별로 세부 절감내역에 따라 능동적 · 적극적 노력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산절감으로 인정

- 예산절감의 범위에는 세출예산 절감과 수입 확충, 사업량 · 성과 제고, 민자유치를 통한 절감 등이 포괄적으로 포함

- 예산절감 및 재투자 실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추진되는 모든 사항들이 관련 법령* 및 절차**에 위배되지 않고 합당하게 이루어져야 함

  * 국가재정법, 지방재정법, 지방계약법, 예산편성관련 지침 등
  **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, 지방채발행계획 반영, 투융자심사 이행 등

- 예산절감 및 재투자 실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근거자료 제시가 가능해야 함

- 예산절감 인정 범위는 자치단체별 세부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 범위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님

- 예산절감으로 인해 계획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거나, 결과적으로 대국민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예산절감의 기본적 취지에 맞지 않음

- 국고보조금, 시·도비보조금 등 사업이 지정되어 교부되는 재원은 최종적으로 집행이 이루어지는 자치단체에서 절감목표 및 실행계획 수립

  * 시·도 차원에서 시·도비 보조금을 절감하는 것은 가능하나, 시·군·자치구에 재정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의 절감은 지양

(2) 인력운영비, 기본경비

【인력운영비】

- 인력운영비*는 조직개편에 따른 초과현원의 조기해소 및 작고 알뜰한 정부 구현을 위한 인력의 긴축운영을 통해 절감

  * 총액인건비 항목에 포함되는 19개 통계목(인건비 9개 통계목, 업무추진비 3개 통계목, 직무수행경비 3개 통계목, 성과상여금, 연금부담금, 국민건강보험금, 연금지급금)

- 조직 구조조정 및 신규증원 최소화와 정원대비 현원의 결원율 일정비율 유지

- 새로운 행정수요는 기존인력 재배치를 통해 해소하는 등 신규증원을 통한 인건비 증액은 최대한 억제

【기본경비】

- 기본경비*는 부서운영에 필수불가결하게 소요되는 경비로서 불요불급한 경비를 제외한 최소한의 경비로만 운영

  * 조직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비(일반 수용비, 급량비, 여비, 공공요금 등)

① 절감으로 인정되는 경우

- 자치단체별로 행안부에서 제시한 총액인건비 한도액보다 적게 편성하거나 집행분에 대한 자연적인 절감



〈예 시〉

* 행정안전부에서 승인한 총액인건비가 350억이었으나, 실제 편성액이 340억이면 10억을 절감액으로 인정

- 조직운용의 효율성과 대국민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조직 재설계 등 조직 개편을 통한 절감



〈예 시〉

* '00시' 연도중 2차례에 걸친 조직개편을 추진(중간관리자 실무인력 전환, 문서 전달 사송원 폐지 등 정원감축 : 6,292명 → 6,173명)하여 인건비 52억 절감

* '00시' 시정 전분야 개인별 직무분석 및 조직재설계를 통해 32명을 감축하여 인건비 17억 절감

- 당해연도 신규채용계획 인원 중 미충원 인원에 대한 인건비 절감 예상분도 절감실적으로 인정



〈예 시〉

* '08년에 신규 채용인력을 100명 충원예정 이었으나(당초예산에는 미반영) 50명만 충원한 경우 미충원 50명에 대하여는 실제 예산상 절감은 아니지만 절감예상분을 산정하여 절감액으로 인정 (예:50명*5,500만원=275,000만원)

- 불필요한 야근 억제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절감한 경우도 예산절감으로 인정

- 기본경비는 당초에 반영된 예산을 자체 자치단체 절감계획(방침)에 따라 일률적으로 또는 재정운용 여건에 따라 일정부분을 절감



〈예 시〉

* 공무원에게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(203-04)를 본청 · 소속기관 모두 일률적으로 10%씩 절감하고 절감재원을 경제살리기 사업에 재투자

* 조직 내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(일반수용비)를 부서 단위로 5%씩 일률적으로 절감하고 절감재원을 경제살리기 사업에 재투자

- 기본적인 인쇄물의 경우, 자치단체내 자체 발간실 운영을 통해 일반수용비 절감



〈예 시〉

* '00구' 단순 인쇄하여 사용하는 교육교재, 간부 회의서류, 각종 민원발급 신청서, 홍보물 등을 자체 운영하는 발간실을 통해 인쇄하여 일반수용비 1.9억 절감

- 고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에너지 절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공공요금 등 절감



〈예 시〉

* '00시' 도시철도공사는 에너지 절약을 위한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과학적인 에너지 절약 체계 구축을 통해 전력요금 63억 절감

* '00시' 상수도사업본부 00정수사업소가 한국전력과 자율절전 요금제 약정을 체결(전력절감 실적에 따라 지원금 지급)하여 6백만원 절감

* '00구' 고유가 시대를 맞아 가로등 격등제 실시(전체 가로등 3,800등 중 격등 등수 672등)로 연간 48백만원 절감

* '00군' '06~'08년까지 청사 및 산촌민속박물관 태양광발전시설, 모험레포츠 연수원 태양열 급탕시설 등 신 ·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여 연간 1.6억 운영비 절감

- 중앙부처 또는 전문기관에서 추진하는 경영혁신, 예산절감, 에너지절약 경연(촉진) 대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은 경우 해당 사례의 해당연도 실적에 대하여는 절감으로 인정



〈예 시〉
* '00시' 도시철도공사는 에너지절약 촉진대회에서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한 바, 절감실적 63억 절감으로 인정

- 한도액(상한액)이 정해진 경비의 경우, 당초 예산 편성후에 추경을 통해 한도액 내에서 증액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액하지 않은 경비는 절감액으로 인정



〈예 시〉
* '08년 당초예산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(또는 사회단체보조금)를 편성(7억)하고 추경에 증액하려던 상한액내(10억)의 업무추진비(3억)를 편성하지 않은 경우 미편성분 3억을 절감으로 인정

② 절감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

- 당초부터 정원(정수)을 과다하게 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거나, 초과근무수당 등을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경우

(3) 사 업 비

- 「예산절감 원칙 및 중점 착안사항」을 바탕으로 자치단체의 모든 사업을 원점(zero-base)에서 철저히 점검
  - 사업의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은 예산편성 요구 단계에서 제외

-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자치단체가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자체사업을 절감 대상으로 하되, 제도개선 등을 통해 보조사업 절감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

  * 보조사업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(기초노령연금 등)과 같이 사업의 성격상 절감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

- 사업비의 삭감으로 인하여 사업목표 달성에 차질을 주거나, 국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줄어드는 것은 예산절감의 취지에 맞지 않음

  – 특히, 사업수혜자가 정해져 있고, 법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복지사업 예산의 경우에는 예산절감을 최소화

- 각종 공사 · 용역 계약 등 집행에 따른 낙찰차액은

  – 계약방식 변경, 제도개선 등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 절감한 경우, 설계 변경을 통해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경제살리기 등에 재투자한 경우는 예산절감 실적으로 포함



〈예시〉

* 수의계약 대상사업을 공개경쟁계약으로 추진, 여러 부서의 사업을 모아서 통합 · 일괄 발주, 최저가 낙찰제의 신규 적용 등

① 절감으로 인정되는 경우

〈계약 · 설계방식 개선을 통한 절감〉

- 계약심사 부서를 설치 · 운영하여 철저한 심사를 통해 구매 · 용역 · 공사에 대한 창의적인 공법 도입, 불필요한 공정 제거, 과다설계 · 과다계상 제거, 정확한 단가 · 수량 산출 및 이기착오 등을 통해 예산을 절감



〈예 시〉

* '00시' 계약심사과를 설치하여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원가심사 강화로 '03~'07년간 총 1만여건 10.2조 규모를 심사하여 8,500억 절감

- 기존에 수의계약을 통해 추진하던 사업을 공개경쟁계약 등 계약방식을 변경하거나, 최저가낙찰제를 신규 적용하여 예산을 절감



〈예 시〉

* '00시' 사업제안서를 받은 후 운영방안 우수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2단계 입찰방식을 통해 시설의 획기적인 개선과 4.5억 절감

* '00시' 녹지사업소 연료비를 수의계약이 아닌 일반경쟁입찰(전자입찰, 단가계약)로 전환하여 10백만원 절감

* '00시' 단체수의계약에 의하던 정기간행물 발행 관련 인쇄물 단가계약을 입찰하여 45백만원 절감

- 매년 관행적으로 지원된 사업비를 합리적인 원가산정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예산을 절감



〈예 시〉

* '00시'는 매년 시내버스업체의 적자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시내버스 제도(버스준공영제)를 전면 개편(노선연장 축소, 운행체계 개편)하여 3년간('08~ '10년) 운송 원가 311억 절감 추진

- 민간기관에 용역을 발주하여 추진하던 설계 · 공사 등을 자치단체의 기술직 공무원들로 설계단 · 감리단을 구성 · 운영하여 직접 추진함으로써 예산을 절감



〈예 시〉

* '00시' 00대교 보수 · 보강 공사 추진을 위해 외부에 실시설계용역 시행 후 공사 발주 예정이던 것을 담당공무원이 기술자문 등을 통해 공법검토 등 직접 설계를 실시하여 실시설계비 1.1억 절감

* '00시' 매년 시행하는 소규모사업에 대해 공무원 자체 설계단을 구성 운영하여 '00~'08년까지 총 10억 설계비 절감

* '00군' 토목설계 전담부서인 '설계담당' 설치 및 읍면 합동 설계반을 운영하여 '08년 설계비 5.2억 절감

* '00군' '05~'08년까지 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통합감리 용역을 자체인력으로 시행하여 감리비 6.3억 절감

● 각종 공사 또는 사업 시행과정에서 신기술 · 신공법, 경제적인 공법을 적용하여 예산을 절감



〈예 시〉

* '00시' 교량기초 공사를 현장여건에 맞는 창의적인 공법으로 변경(수중우물통 공법 → 가설공법) 시행하여 사업비 12억 절감

* '00시' 도시철도공사에서 시행하는 승강장 스크린도어의 핵심장치를 국산화하고 설치공법을 개발하여 사업비 238억 절감

* '00시' 도로안전시설 중 미끄럼방지시설 설치공법을 하자우려가 적고 설치단가가 경제적인 방식으로 변경(수지계 표면처리방식 → 표면재료 제거방식)하여 공사비 1.1억 절감

* '00시' 가로변버스전용차로 포장방법을 변경〔정류장 : 개질ASP(5cm) 주행구간 : 칼라아스콘(5cm) → 정류장 : 개질ASP(10cm), 주행구간 : 개질(5cm)하여 공사비 36억 절감

* '00시' 00로 구조개선 및 진입연결로 건설공사시 지장물(한전 154kv)을 이설하지 않고 옹벽구조를 변경하여 시공하는 방법으로 이설비 12.7억 절감

* '00군' 군청과 사업소간 전화 이용시 정책통신요금을 지출하던 것을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전자정부통신망에 최신기술인 IP(Internet Phone) 전화를 접목하여 요금 전액(43백만원) 절감

- 사용빈도가 높은 공통물품 · 장비를 공동구매하여 단가를 낮춤으로써 예산을 절감



〈예 시〉

* '00시' 00구 청소과 및 소방서 등의 차량보유기관의 차량부품 · 용품 · 소모품 등을 부품제작사와 대리점식 직거래 협약을 통한 통합 구매로 3.3억 절감

* '00시' 각 부서별로 개별 구입하던 소모성 물품을 소모성물품구매관리시스템(MRO)을 도입 · 운영하여 온라인 일괄구매 단가계약으로 구매비 연 4억 절감

- 사업비의 경우 일부 재원이 절감유보(예산미배정)된 후 배정액에 대해서만 계약방식 변경 등을 통해 추가로 낙찰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절감유보분과 낙찰차액을 모두 절감으로 인정



〈예 시〉

* 000포장공사 당초예산 10억 중 1억을 절감유보(미배정)후 배정된 9억에 대하여만 계약방식 변경 등을 통해 추가로 5천만원에 대한 낙찰차액이 발생한 경우(8억 5천만원에 계약)에는 절감유보분 1억과 낙찰차액 5천만원을 모두 절감으로 인정

〈유사 · 중복 시설 · 행사 통 · 폐합을 통한 절감〉

- 자치단체간 유사시설을 공동으로 건립하거나, 하나의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



〈예 시〉

* '00도 00시'는 ㅁㅁ시 ㅁ동 하수종말처리장을 공동 사용하여 인건비 및 시설 운영비를 '93년부터 약 375억 절감 (00시는 매년 ㅁㅁ시에 50억의 분담금을 지급하고 유수량에 의해 정산지급)

* '00광역시'와 '0구'는 00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을 각각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공동으로 조성하기로 협의하여 부지매입비 등 123억 절감 예정(당초 0구 사업비 260억 – 00시 사업비 185억 = 75억 절감, 00시는 185억중 부지매입지 48억 절감)

- 대상 시설과 업무내용이 유사하나 그간 각각 별도로 추진되던 시설 점검 등에 대해 통합시행을 통해 예산을 절감



〈예 시〉

* '00시' 동일 도로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와 정밀안전진단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각각 시행하던 것을 하자검사와 정밀점검(정밀안전진단) 병행시행으로 2.2억 절감

- 유사 · 중복되거나 경제성이 낮은 지역 행사 · 축제를 통합하여 행사 · 축제비 절감



〈예 시〉

* '00시' 당초 2개기관(00부 · 00시)이 동일 장소에서 각각 개최될 예정인 취업박람회 (4개) 행사를 통합 개최하여 행사비 2.3억 절감

* '00군' 매년 각각 개최하던 OO마라톤대회와 △△마라톤 대회를 통합 개최하여 행사비 1.7억 절감

* '00군' 2개 문화 · 체육 행사를 하나의 행사로 통합 개최하여 70백만원 절감

- 지역별로 소액 분산투자 계획이 있는 시설에 대한 설치기준 조정(변경) 등 규모 조정으로 건립비 및 운영비 등 절감



〈예 시〉

* '00시' 사회복지회관, 노인복지관 등 유사공용시설 설치기준(예: 자치구별 1개소)을 재검토하여 사업규모를 통합 조정하여 2개년간('08~'09) 100억 절감 효과

〈기관간 업무협조를 통한 절감〉

● 유관기관 간에 업무협의를 통해 사업비를 절감



〈예 시〉

* '00군' 상수도 도수관로사업을 관내 환경관리공단의 하수도 관로매설 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굴착비용 등 13.5억 절감

* '00시' 공유수면 매립에 필요한 토사를 당초 거리가 먼 체육공원에서 확보할 계획 이었으나 자치구와 협의하여 인근의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활용함으로써 사업비에 편성된 토사 운반비용 등 약 7억 절감

* '00시' 건설본부 및 자치구청 등 유관기관에서 시행하는 도로개설(확장) 공사 시행시 상수도관 부설공사를 병행 시행하여 2.8억 절감

● 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하는 행사를 방송사 · 언론사 · 은행 등과 공동 추진으로 행사비 절감



〈예 시〉

* '00시' 신진디자이너컬렉션을 방송사(SBS)와 공동 개최하여 신진디자이너 심사 · 선전비용 절감 2.3억(방송사 부담) 및 홍보비 1.7억 절감

〈제도 · 시스템 ·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절감〉

●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업무에 접목하여 예산절감



〈예 시〉

* '00시' 지하주택 침수방지를 위해 설치된 수동식 수중펌프에 침수전 자동펌핑될 수 있도록 자동펌핑시스템(수위조절기)을 부착하여 신규 자동펌프 구매비 4억 절감

* '00시' 지하철 역사 비상게이트를 단가를 낮춘 양방향 비상게이트를 개발 설치하여 125억 절감

* '00시' 시정 홍보를 위해 국내1위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닷컴과 협의하여 '포털 검색 제휴 및 업무 협약'을 실시하여 2.6억 광고비 절감

* '00시' 과태료 고지 관련 우편업무를 우체국전자우편제도를 활용 일괄 처리하여 고지서 인쇄비 등 1.8억 절감

* '00시'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비례제(일률적 수수료 부과방식에서 배출량에 따른 부과방식으로 전환)를 도입하여 음식물쓰레기 20% 감량 및 연간처리비용 15억 절감

* '00시' 시 자체 공원·녹지사업을 추진하던 중 OO산 일대 절토작업 현장을 방문 수목상태가 양호한 수목이 벌채되는 것을 보고 해송, 벚나무 등 9,036본의 나무를 공원·녹지 지역에 무상이식하여 수목구입비 및 운반비 36억 절감

* '00시' 희귀조류이자 천연기념물인 황새와 두루미에 대한 자연부화 및 인공포육에 성공하여 관람객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 및 구입, 교환 등에 소요되는 비용 65백만원 절감

● 종전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업무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예산절감



〈예 시〉

* '00시' 상수도 사용량에 대한 검침고지를 사용량에 관계없이 월별 추진해 오던 것을 월사용량 100㎥ 미만 급수전에 대하여는 격월로 조정함으로써 연간 검침 위탁경비 약 8.1억 절감

* '00시' 화생방 기술정보지를 매년 책자로 발간하고 추가로 CD로 별도 제작·배부 하던 것을 책자발간 대신 CD로만 제작·배부하여 14백만원 절감

* '00시' 국민주택 건설용역 부가세 산정방법을 중앙부처 및 국세청 등과 협의하여 부가세 산정방법을 개선, 공사에 소요되는 부가세 560억 절감

* '00시' 시내버스 현금영수증의 낮은 수취율로 인한 버스환경저해, 영수증 용지 낭비 등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발급방법을 개선(현금승차 모든 승객→영수증 요청 승객)하여 영수증 용지구입비 1.4억 절감

* '00도' 공무원 건강부담금 산정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산정기준에 대해 이의신청을 통해 대상부과범위 재조정을 통해 1.3억 절감

● 사회환경 및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기존 업무 개선을 통한 예산절감



〈예 시〉

* '0구'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고 인터넷 등 각종 정보통신의 발달로 반장의 역할이 축소됨에 따라 반장 2,066명 전원을 무급 자원봉사자로 전환하고 통장 정수를 축소하여 수당 · 상여금 등 6.1억 절감

* '00시' 전자문서 시행과 중앙-지방간 문서사송 건수가 감소함에 따라 문서사송제를 폐지하고 행정업무 인력으로 재배치, 문서사송여비 등 연간 6백만원 절감

● 선진 외국 사례 등 벤치마킹을 통한 예산절감



〈예 시〉

* '00시' 선진외국 동물원의 친환경 동물원 조성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방사장 경계 휀스에 수목 울타리 및 수목통로 조성을 자체 일용인부와 수목을 활용함으로써 공사비 5백만원 절감

● 자치단체 예산낭비 신고센터에 접수된 낭비사례를 분석하여 관련 사업을 축소 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추진방식을 개선한 경우에는 관련 사업비를 절감으로 인정



〈예 시〉

* 000사업에 대해 예산낭비신고가 접수되어 자체분석 결과 사업을 축소하기로 하여 당초 총 사업비(100억) 중 관련 사업비(10억)을 축소한 경우 10억을 절감으로 인정

〈전문기관 위탁을 통한 절감〉

- 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함으로써 예산절감과 대국민 서비스 향상 도모



〈예 시〉

* '00시' 상수도 운영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지난 2년간 인건비 6억 절감, 유수율 제고로 24억 절감

* '00시' 대형수도계량기 교체업무를 민간위탁하여 기존 인건비 및 유지관리 비용 3억 절감 (종전 연간 6억 4천만원 소요 → 3억 4천만원에 위탁)

〈기타 사항〉

- 예비비의 경우 예비비 편성기준*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감액하여 지역경제살리기 등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였다면 일반회계 중 감액한 금액도 절감으로 인정

  * 일반회계의 경우, 당초 예산규모의 100분의 1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고 특별회계는 자율적으로 운영 (지방재정법, 지방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)



〈예 시〉

* 당초 예산에 편성된 예비비 편성기준액이 30억(3,000억 예산규모)이나 50억을 편성하고 추경시 20억을 지역경제살리기 등 사업에 재투자한 경우

② 절감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

- 각종 공사 · 용역 계약 등 집행에 따른 단순한 낙찰차액*

  * 당초 예산액과 경쟁 입찰로 인하여 낮아진 계약금액과의 차액

- 능동적 · 적극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통상적으로 업무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불용 예산

- 사업타당성 재검토를 통한 사업계획 변경이 아닌, 사정변경이 생기거나 주변여건이 변화하여 편성할 당시와 달리 불필요 하게 된 예산이나 사업규모가 줄어 예산이 축소된 경우

- 국비보조사업, 시 · 도비보조사업의 경우 중앙부처 등에서 보조 금액이 축소되어 부담비율에 따라 자치단체 예산을 축소한 경우

  * 자치단체가 원가심사 강화, 신공법 적용 등 자체적 노력으로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절감한 경우, 일정한 범위의 잔여재원을 동일한 목적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보조금법 개정 협의중

- 예산절감 명분하에 수혜대상이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를 일률적으로 삭감하여 국민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경우

  〈예 시〉
  * 기초노령연금, 생계비 등 수혜보장적수혜금 등

(4) 재무활동

- 사업이 아닌 재정보전적 이전재원, 채무상환 등에 해당하는 경비로서 법적 · 의무적인 경비가 다수인 점을 고려하여 최대한 노력을 통해 이자분 등 절감

  * 내부거래지출(6개 편성목) : 공기업경상(자본)전출금, 기타회계전출금, 기금전출금 등
  * 보전지출(4개 편성목) : 차입금이자상환, 차입금원금상환, 예치금, 반환금기타

① 절감으로 인정되는 경우

- 사업의 타당성을 재조사하거나 사장(死藏) 사업이 없는지 원점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매년 통상적으로 이전되는 재원에 대해 절감



〈예 시〉

* 일반회계 → 기타(공기업)특별회계 경상(자본) 전출금 규모 절감

- 지방채차입금 연차별 상환계획에 의거 상환하던 중 상환 미도래분에 대해 조기에 상환하여 이자분 예산 절감



〈예 시〉

* '08년 현재 상환잔액이 10억이고 이자가 3억인 경우 '08년도에 상환잔액을 조기 상환한 경우에는 이자분 3억은 절감으로 인정

- 고금리 지방채무 잔액을 저리(低利)로 차환*하는 방법을 통해 이자분 예산 절감

  * 신규로 지방채를 발행하여 기 발행된 채무를 상환하는 것. 구 지방채의 상환에 소요되는 자금을 신규 지방채발행으로 조달하는 것이며 차환으로 인해 채무는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 단지 새로운 조건하에서 재편성되는 것임



〈예 시〉

* 연이율 5%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차입하여 운영하던 중 저리(3.5%) 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하는 경우 1.5% 이자분에 대하여는 절감으로 인정

② 절감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

- 매년 일반회계에서 공기업, 공사 · 공단에 전출되는 예산을 전년도와 비교하여 특별한 이유없이 적게 지원한 경우

(5) 수입 확충

- 지방세, 세외수입 등 수입확대는 단순히 세입추계와 실제 세입액의 차액이 아니라,
  - 징수율 제고 등 능동적 · 적극적 노력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산절감으로 인정

① 절감으로 인정되는 경우

- 전년도와 대비하여 징수율 제고의 효과가 나타난 경우에 절감으로 인정



〈예 시〉

* '07년 취득세 징수율이 85%이었으나, '08년 87%까지 상승되었을 경우에는 징수율 2%에 따라 나타나는 지방세 증가액을 세입증가액으로 판단

  – '08년 당초예산 기준 취득세가 100억이라면('07년 징수율 85%를 기준), 징수율을 87%까지 증대하는 경우 약 2.4억의 수입이 세입증가액으로 인정 {100억 * (0.87 / 0.85) = 102.4}

- 누락세원을 발굴하여 세입을 증대
  - 조세회피 한 해산법인 세무조사 탈루세원 추징, 관내 및 관외법인 세무조사로 탈루세원 추징 등



〈예 시〉

* '00시' 하수도사용료 부과 누락재원 발굴을 위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하수도사용료 부과누락분(5,098건)과 지하수 부과누락분(74건)을 발굴 · 추징함으로써 27억 세입 증대

* '00시' 지상 · 지하 시설물 시 · 군 · 구 합동 일제정비로 누락된 시설물 도로점용료 부과로 시 · 구세 2년간 246억 세입 증대

● 고질 ·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을 통한 세입 증대

– 일정규모이상 고액체납자 집중정리, 은행 · 보험 · 카드사 등 은닉자산 추심, 국외이주 · 허위전입 등으로 납세회피자 추적, 조기 공매와 공매기간 단축 등



〈예 시〉

* '00시' 지방세 전산수납시스템 구축으로 수납처리기간 단축 및 연간 30억원에 이르는 고지서 발급비용 등 절감

● 지방세 탄력제도 등 제도 활용을 통한 세입 증대



〈예 시〉

* '00도' 지방세 탄력제도를 활용(재산세 세율 0.3% → 0.18%로 인하)하여 민간 항공사의 항공기정차장 등록을 유치하여 46억 세수 증대

●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 사업을 새로이 발굴하여 세입을 증대

– 공공청사 등 기관의 주차장을 유료화하여 주차요금을 징수

– 당초예산 편성후에 공공청사내 사무실을 새로이 민간단체에 임대하여 임대 사용료 수입 증대

– 시 · 도립 병원의 경우, 병상 가동률 향상 및 건강검진 유치로 세입증대 등



〈예 시〉

* '00시' 시에서 운영하는 00병원에서 결핵환자 격리병실 운영과 성인병 등 건강검진 유치로 9.5억 세입증대

* '00시' 대공원 식물원내에 일반화원에서 판매되지 않는 무인 이색식물 판매대를 운영하여 9백만원 세입 증대

- 기존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업무에 대해 제도개선을 통한 세입 증대



〈예 시〉
* '00도' 민간에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해 보조금결제전용카드제를 도입함으로써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카드사용액의 일정부분을 적립하여 1.7억 세입 증대

- 창의적인 노력은 아니나, 기존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 업무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설득 · 이해시키고 세입을 증대한 경우



〈예 시〉
* '00시' 시장활성화 차원의 제한경쟁(지역 · 실적) 입찰 전례를 지역제한입찰로 개선하는 과정에 기존 입점상인들의 반발을 이해 · 설득시키고, 임대수입 8억 증가

② 절감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

- 당초예산에 편성 세입이 자치단체의 능동적 · 적극적 노력없이 예년수준에 비추어 자연스럽게 늘어난 경우

- 국가의 세목 신설, 세율인상 및 부담금 개편 등 제도개선에 따라 지방세 · 세외수입이 자연스럽게 늘어난 경우

- 새로운 세원 발굴 등 창의적인 노력이 없으며, 기존에 업무추진시 당연히 했어야 하는 부분을 확인을 통해 세입증대한 경우

- 자발적 · 특별한 노력이 없이, 수요자(민간인)의 필요에 의해 공유재산 등 구입을 통해 갑작스럽게 세입을 증대한 경우

- 특별한 노력이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절감평가 기준일 현재 납부기한이 미도래하거나 미납한 경우

(6) 예산외 (사업량 · 성과 제고)

- 예산절감에 따라 신규 재원이 실제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도, 민자유치 혹은 동일 예산으로 사업량 · 성과의 대폭적 증가 등 예산절감과 사실상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,
  - 세부적인 절감내역과 객관적인 절감액 추계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예산절감 실적에 포함



〈예시〉

* 당초 500억의 예산으로 지방도 5km를 건설 예정이었으나, 신공법 도입, 설계 변경 등을 통해 계획보다 1km를 추가로 건설 → 추가로 건설된 1km에 해당하는 100억 절감 효과

① 절감으로 인정되는 경우

- 신규 재원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도 동일 예산으로 사업량 또는 성과의 대폭적인 증가가 발생한 경우



〈예 시〉

* 당초 500억의 예산으로 도로 5km를 건설 예정이었으나, 신공법 도입 또는 설계 변경 등을 통해 계획보다 1km를 추가로 건설한 경우에는 추가로 건설된 1km에 해당하는 100억을 절감액으로 인정

- 당초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으나(비예산)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예산절감(수입증대) 효과를 가져온 경우



〈예 시〉

* '00시' 방송국 등에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TV 프로그램 방영시 청계천 등 각종 시책사업 적극 홍보로 2.3억 광고비 절감효과 거양

* '00시' 무가지 매트로에 천만상상 오아이스 고정 코너를 신설하여 시정 홍보로 광고비 52백만원 절감효과 거양

* '00시' 동물방사장 장기 사용으로 인한 토양오염, 냄새발생 등 동물생육환경 개선을 위해 재건축현장 업체로부터 마사토를 무상공급 받아 복토를 실시하여 공사비 2.7억 절감 효과 거양

* '00구' 관내 대형할인점(이마트)과 양해각서(MOU)를 체결하여 이마트는 도서관 설치공간을 7년간 무상제공하고 공공요금을 부담하며, 00구는 장서 · 비품 구입을 부담함으로써 도서관 부지 및 건축비 30억 절감 효과 거양

- 예산낭비 요인이 많은 경비 등에 대한 지원 방법 등 개선을 통해 예산 절감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고, 타 자치단체에도 확산이 가능한 경우



〈예 시〉

* '00도' 자체사업으로 민간에 지원하는 경비에 대해 자금교부전 민간사업자의 자부담 경비를 예치하도록 함으로써 사업투명성 확보 및 예산낭비 요인 방지

② 절감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

-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추진이 가능하며, 당연히 자치단체에서 본연의 업무로 추진해야 하는 경우

(7) 민자유치

- 자치단체가 재원을 부담하여 추진할 사업을 기업 등 민간이 재원을 부담하여 추진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온 경우
  - 궁극적으로 공공성이 있고 국민에게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와야 하며
  - 민자유치를 통해 설치된 시설물은 건립 후 일정기간 동안 시공자에게 사용권(운영권)을 줄 수 있으나, 최종 소유권한은 자치단체에 있어야 함

- 민간투자사업 협약 체결시 사업비에 대한 산정근거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가를 확인

  * 다만, 민자유치 실적은 예산절감액 합계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표기하도록 하며 정성적 평가 실시 검토

- BTL, BTO 사업방식으로 추진한 사업도 포함

BTL(Build-Transfer-Lease)	추진방식	BTO(Build-Transfer-Operate)
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(Build)한 후 국가·자치단체에 소유권을 이전(Transfer)한 후		
민간이 국가·자치단체에게 시설을 임대(Lease)하여 시설임대료 등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(임대형 민자사업)	사업방법	민간이 시설을 운영(Operate)하면서 시설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투자비를 회수(수익형 민자사업)
정부의 시설임대료	투자비 회수	이용자의 사용료
교육·문화·복지시설 등 사용료 수입으로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시설	대상시설 성격	도로·철도·항만 등 사용료 수입으로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시설
낮음(정부가 수익률 보장)	사업리스크	높음(수요에 따라 수익률 변동)
상대적으로 낮은 수준	수익률	상대적으로 높은 수준
노후 하수관거, 문예회관·도서관·미술관·박물관, 노인의료시설 등	사업예시	인천공항고속도로, 천안~논산간 고속도로, 부산신항만 등

① 절감으로 인정되는 경우

- 해당연도에 협약, 약정서 체결 등 민자유치를 위한 사전 절차와 사업 착수(계약)가 이루어진 사업에 대하여만 원칙적으로 인정

  – 다만, 협약이 이루어졌지만 제반절차 준비로 인해 사업 기초절차가 다음 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예외 인정

- 민간기업의 투자 유치를 통한 예산 절감



〈예 시〉

* '00시' 도시철도 0호선 주변 주차난 · 불법주차 문제 해소를 위한 주차장건립을 민자유치를 통한 BTO 방식으로 추진하여 건축비 등 140억 절감(준공과 동시에 등기는 시로 되며 19년 동안은 시공사가 사용)

* '00시' 청사내에 천연가스 충전시설을 도시가스 공급업체 부담으로 설치하여 설치비 15억 절감 및 도심권 환경개선

* '00시' 00대 학생들의 개인정보 등 보안성을 강화하고 이용시 편리하도록 다기능 스마트카드를 민자유치를 통해 도입하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4.4억 예산 절감

- 민간기업의 투자 유치를 통한 세입 증대



〈예 시〉

* '00시' 월드컵경기장의 사후활용을 위해 건축물 기부채납(00마트, 00레포츠)과 임대사업(20년)에 따른 대부료 48억 세입 증대

* '00시' 월드컵경기장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민자유치로 임시주차장 부지를 야간시간대에는 자동차극장으로 활용하여 세입 증대(매출액의 10%인 연간 약 5천만원~1억 세입 증대)

- 자치단체의 노력으로 민간기업의 후원 협약 등 사회협력 유치를 통한 예산 절감



〈예 시〉

* '00시' 청소년복지 부분에 민간기업의 사회협력사업 유치를 이끌어내어 아동단체급식시설 확충 등 4개 사업 17.7억을 절감

② 절감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

- 사업 협약이나 약정서 체결 등 절차가 이루어졌으나, 타당성조사, 실시설계 등 계약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

- 민자유치를 통해 설치되는 시설물 등이 공공성과 주민 복리 증진, 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세입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사업

- 시설물 등의 소유권이 자치단체가 아닌 시공자 등에 있고,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



6. 예산편성상 절감 인정범위

(1) 예산편성상 절감 개념

-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업을 원점(Zero-Base)에서 타당성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각종 낭비요소를 줄이고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

  - 계속사업은 실효성이 낮거나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축소 · 폐지, 유사 · 중복 사업은 통 · 폐합 등을 통해 예산을 절감

  - 신규사업은 편성전에 사업의 필요성 등을 철저히 분석하고, 원가산정 방식 검토 등을 통해 예산을 절감

- 절감된 재원은 경제살리기 · 서민생활안정 · 일자리 창출 · 물가 및 에너지 대책과 지역현안사업에 우선적으로 활용

- 당초에는 과다하게 편성될 예산이었으나, 각종 낭비요소를 줄이기 위한 예산절감 노력을 통해 많이 반영될 부분을 좀더 적게 반영하는 것임

  - 예산규모를 총액적으로 전년도보다 일률적으로 적게 편성하는 것이 아님

    * '09년 예산편성시 절감을 하지 않았다면 2,000억으로 편성될 예산을 유사 · 중복 사업 통 · 폐합, 원가산정방식 도입, 한도액이내 편성 등을 통해 1,900억원으로 편성했을 경우 절감액은 100억이 되는 것임 (이 경우, '08년 예산은 1,900억보다 적을 수도 있고, 많을 수도 있음)

(2) 절감으로 인정되는 경우

◍ 계속사업의 경우, 모든 사업을 원점(Zero-Base)에서 낭비요소를 점검하여 예산을 절감

– 관행적으로 매년 유사한 금액이 지원되는 사업에 대한 자체성과평가 등을 실시하여 비효율적 · 낭비적인 사업은 축소 · 폐지



〈예 시〉

* 매년 민간단체에 지원되던 행사비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, 예산 규모를 축소하여 편성('08년 5억 → '09년 2억), 3억 절감
*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전년도 지원예산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사업비 편성에 반영('08년 1억 편성→ '09년 5천만원 편성, 5천만원 절감)

– 동일 목적의 유사 · 중복 사업의 통 · 폐합



〈예 시〉

* 2개의 사업으로 추진하던 것을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 편성 ('08년 건전육성사업 5억, 청소년 선도활동사업 3억 → '09년 청소년건전육성 6억, 2억 절감)
* '08년에 2개로 추진한 문화 · 체육행사를 하나로 통합하여 편성 ('08년 2개 편성 사업비 10억 → '09년 1개사업 편성 8억, 2억 절감)

– '09년 예산편성 이전에 감사원 등 중앙 · 상급기관, 지방의회 등에서 유사 · 중복사업, 추진방식 등에 있어 문제가 지적된 사업의 축소 · 폐지 〔단, 담당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(주의 · 징계)가 병행된 사업 혹은 회계부정 등에 대한 지적사업 등은 절감이 아님〕



〈예 시〉

*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된 사업에 대해 사업비를 축소('08년 10억 → '09년 8억, 2억 절감)

- 제도개선, 사업추진방식 변경 등을 통한 재정 소요 절감



〈예 시〉

* 자치단체 직영으로 추진하던 사업을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 사업비 절감 ('08년 10억 → '09년 8억, 2억 절감)

- 집중 투자 또는 조기 투입을 통한 공기단축 등으로 실질적인 사업비 절감

※ 중기재정계획('07~'11년)상 사업비 반영 여부 확인이 가능



〈예 시〉

* '08년~'10년 계획중인 사업(총사업비 100억 : '08년 30억+'09년 40억+'10년 30억)에 대해 '09년에 60억을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, 10억 절감 (70억→60억)

* '09년~'10년 2년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예정('09년 30억, '10년 20억)인 산업단지 조성 토지보상을 '09년에 완료하고자 45억으로 편성, 5억 절감(50억→45억)

- 지방채 차입금을 연차별 상환계획에 의거 상환하던 중 상환 미도래분에 대해 조기에 상환하여 이자분 예산 절감



〈예 시〉

* '09년 이후 상환액에 따른 이자가 5억이나, '09년도에 일시에 상환함으로써 이자를 3억만 상환하게 될 경우 2억 절감

- 고금리 지방채무 잔액을 저리(低利)로 차환하는 방법을 통해 이자분 예산 절감



〈예 시〉

* 연이율 5%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차입하여 운영하던 중 저리(3.5%)의 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을 통하여 1.5% 이자분에 대한 편성상 절감

- 전년도와 대비하여 동일 사업에 대하여 사업량이 동일하거나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가 조정 등을 통해 예산을 절감



〈예 시〉

* 전산장비 리스 물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와 대비하여 단가조정을 통해 예산 절감('08년 10억 → '09년 12억이 반영예정이었으나 9억만 반영, 3억 절감 (12억 → 9억))

- 편성한도액(상한액)이 정해진 경우, 당초예산에 한도액 이내에서 예산을 편성한 경우에는 차액을 절감액으로 인정



〈예 시〉

* '09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편성한도액이 10억이나 8억만 편성한 경우, 2억 절감

* '09년 정원가산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한도액이 3억이나 2억만 편성한 경우, 1억 절감

- 인력운영비의 경우, 총액인건비 한도액내에서 편성한 경우 차액을 절감으로 인정



〈예 시〉

* '09년 총액인건비 한도액이 400억이나 380억만 편성한 경우, 20억 절감
  단, 절감실적을 위해 당초예산에는 총소요재원 보다 적게(50% 반영 등) 편성하고 이를 실적으로 제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평가시 패널티 부여 예정)

- 계속사업 중 시행연도 첫해 또는 시행중에 집행상 절감으로 인해 '09년 사업비가 감소하게 되는 경우는 절감으로 인정

- '09년 신규사업은 사업의 필요성 등을 철저히 분석하고, 원가산정방식 도입 등을 통해 예산을 절감

- 절감한 금액은 자체적으로 산정하고, 산정내역은 구체적으로 제시가 가능해야 함

- 통상적으로 외부용역비 등으로 편성될 사업이었으나, 자체 합동설계반(또는 감리단) 등을 통해 직접 설계(감리)하기로 결정하여 예산을 절감



〈예 시〉

* 복지회관 리모델링 계획에 따라 당초 5억원의 설계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, 관련 공무원들이 합동근무를 통해 직접 설계하기로 결정하고 예산편성시 미반영, 5억 절감

- 연구용역비 등 편성 전에 자치단체별 내부 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업비를 조정하여 예산을 절감



〈예 시〉

* 연구용역비 등을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 자치단체 내부 자체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통한 절감 (사업부서 요구 10억→예산부서 조정 8억→위원회에서 7억으로 조정, 1억 절감)

- 자치단체별로 '09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사업을 재검토하여 공동건립, 통합시행 등을 통해 예산을 절감



〈예 시〉

* '09년에 경로당을 5개 지역에 50억을 투입하여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5개 지역을 3개 지역으로 통합 · 설치하기로 하고 30억만 반영, 20억 절감

* '09년에 시설별로 각각 시행될 예정이던 하자검사(3억)와 안전진단(2억) 사업을 병행시행하고자 예산을 4억으로 통합 편성, 1억 절감

- 통상적으로 편성될 사업비이었으나, 기관간 업무협조를 통해 예산을 절감



〈예 시〉

* 산업단지 조성공사시 당초에는 100억으로 편성될 예산이었으나 금년도에 '09년 예산편성전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무상으로 토사를 사용토록 하여 토사비용 10억을 줄여 90억만 예산편성

- 국고보조사업은 편성상 절감액을 작성하지 않음

  – 다만, 시 · 도비보조사업의 경우 광역자치단체는 사업비 절감이 가능

    * 시 ·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되던 '00사업'을 '08년 예산이 100억이었으나 사업 구조 조정을 통해 80억만 편성한 경우 절감액은 20억임

    *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일률적으로 시 · 도비보조사업을 삭감하여 기초자치단체에 재정부담을 전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, 사업 축소 · 폐지로 인해 주민복지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

  –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시도비보조사업도 편성상 절감액을 작성하지 않음

- 지방세, 세외수입 등 세입 증대는 편성상 절감실적에 미포함

(3) 절감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

- 연도별 계획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'09년에 사업이 완료되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어 '08년보다 예산이 단순히 줄어든 경우는 예산절감이 아님(자연완료 · 감소)

  * 자치단체별 중기재정계획 또는 전년도 의회제출된 사업설명서 자료 확인 가능

- 모든 사업의 예산을 획일적인 기준(예: 10%)에 의거 전년도(또는 최근 3년간 평균증가율을 적용한 추정예산)보다 삭감하여 편성

7. 절감재원의 재투자

(1) 개 요

◎ 예산집행상 절감된 재원을 경제살리기 · 일자리 창출 · 서민생활안정, 물가 및 에너지절약 분야에 재투자된 경우에 재투자실적으로 인정

- 어떤 사업이 경제살리기 등의 사업으로 인정할 지에 대한 판단은 개별 사업의 성격 · 내용 ·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

* 경제살리기 등 사업 유형(예시)
- 경제살리기 : 전통 · 재래시장 주차장 건립, 중소기업 물류지원 등
- 고용창출 : 지역기업 필요인력 지원 및 양성사업 등
- 서민생활안정 : 서민주거권 보호 등

(2) 재투자로 인정되는 경우

◎ 행정운영경비, 사업비 등에서 절감된 재원을 추경편성과 지방의회 심의를 거쳐 경제살리기 등 사업에 재투자

- 재투자되는 사업 중 사업에 직접적 소요되는 경비와 부수적인 여비, 업무추진비 등 간적접인 경비도 인정



〈예 시〉

* 행정운영경비 절감액 20억을 00도로포장공사에 9억은 시설비, 1억은 일반운영비 · 업무추진비 등으로 재투자한 경우 10억을 재투자실적으로 인정

◍ 지방의회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, 편성된 예산을 전용 · 변경의 방법을 통해 경제살리기 등 사업에 재투자한 경우

* 예산전용은 동일 정책사업내 단위사업간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며, 예산변경은 동일 단위사업내 세부사업간 예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자치단체장의 결정사항임

– 전용 · 변경을 통해 경제살리기 등 사업에 재투자되는 경비의 성격이 시설비 등 사업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와 함께 이동되는 그 부대경비 등 간접적인 경비인 경우에도 인정



〈예 시〉

* 수송및교통 분야(120) – 도로 부문(121) 동일 정책사업내 A단위사업에서 B단위 사업으로 100억을 전용한 경우 100억을 재투자 실적으로 인정

◍ 예비비의 경우 예비비 편성기준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감액하여 경제살리기 등 사업에 재투자한 경우



〈예 시〉

* 당초 예산에 편성된 예비비 편성기준액이 30억(3,000억 예산규모)이나 50억을 편성해 놓은 경우 20억을 사업에 재투자한 경우 20억을 재투자 실적으로 인정

◍ 절감재원을 재난안전, 환경보호 등 국가적 현안과 지역현안사업에 재투자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성격 · 내용 등을 판단하여 재투자 실적으로 인정

– 아동 · 청소년 ·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강화

– 국민의 건강, 생명과 직결되는 사회안전 관련투자 확대

– 국민편의 시설을 조기에 확충하여 삶의 질을 향상 등



〈예 시〉

*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방범용 CCTV 구축, 소방방재장비 보강, 학교급식 지원 등

(3) 재투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

- 전용 · 변경을 통해 경제살리기 등 사업에 재투자되는 경비의 성격이 여비, 업무추진비 등 직접적인 경비가 아닌 간접적인 경비로만 이루어진 경우

- 절감재원이 아닌 통상적인 불용액을 불요불급한 용도로 투자한 경우

- 당초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절감재원이 아닌 단순한 세입증가분으로 추경편성을 통해 경제살리기 등 사업을 편성한 경우



8. 예산절감 평가 및 인센티브

(1) 추진경과

- 새 정부 출범이후, 예산 10% 절감을 국정과제로 추진

- 행정안전부 권고('08.4.4)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별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예산절감 · 재투자 계획을 수립 추진
  - '08년 순계예산의 10%를 전국적인 절감기준으로 제시하여 총 12.3조 절감계획
  - '08년 집행상 5.1조를 절감하여 경제살리기 등에 재투자

- 대통령께 「지방예산 절감 · 재투자 계획」 보고 ('08.4.27,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)

〈대통령님 지시사항('08.4.27)〉

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감 성공 사례는 표창을 하는 게 좋겠다고 보며,
교부금 줄 때 혜택을 주면 좋을 것으로 생각함

(2) 기본방향

- 지방자치단체 통합평가에 포함하여 추진함으로써 지방의 평가부담 완화

  * 실적중심의 통합평가 이외에도 예산절감 분위기 확산 및 우수사례 전파를 위해 예산절감 우수사례에 대한 발표대회 개최

- 획일적 기준에 의한 평가가 아니라, 자치단체 성격 및 재정력 격차 등에 따라 그룹핑화하여 평가의 공정성 · 실효성 제고

  * 광역은 특별 · 광역시와 도 구분, 기초는 시, 군, 자치구로 구분

- 「지역별 특성 · 재정여건에 따른 자율적 추진」이라는 점을 강조하고, 절감비율 뿐만 아니라 예산절감 노력도 · 지속가능성 · 파급효과 등을 반영하여 다차원적 지표 개발

  * 예산절감 사례 · 시책의 우수성, 자치단체장 관심도, 외부전문가 참여도, 업무개선 노력도 및 활동실적 등 지표 반영

- 행안부 · 자치단체 · 민간전문가 등이 평가기준 설계 및 평가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여 객관성 · 신뢰성 제고

  * 평가방안 · 지표 설계는 지방행정연구원 연구정책과제에 포함하여 추진

- 시 · 도에 대한 평가는 행안부가 총괄하되, 시 · 군 · 자치구에 대한 평가는 시 · 도가 총괄하도록 권한 이양

- 예산절감 · 재투자 실적이 우수한 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,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

(3) 평가방법(안)

- 예산절감 · 재투자 실적 평가

  – 평가에 대한 자치단체의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「지방자치단체 통합 평가」에 포함하여 추진

- 예산집행과 예산편성 결과를 모두 포함하여 평가

  * '08년 집행상~'09년 편성상 절감 · 재투자 실적은 '09년 3~6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포함 실시

- 평가지표는 절감실적, 예산절감 노력도 등을 반영하여 설계

● 예산절감 우수사례 발표대회

- 예산절감 분위기 확산 및 우수사례 전파를 위해, 예산절감 우수사례에 대한 발표대회 실시

  * '08년에는 '08년 10~12월중에 실시 예정

(4) 인센티브 부여

● 예산절감 · 재투자 실적이 우수한 자치단체 및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표창(상장) 및 재정 인센티브(교부세 활용) 실시

● 행안부는 시 · 도를 평가하고, 평가결과에 따라 시 · 도에 직접 인센티브를 부여

- 시 · 군 · 구는 시 · 도에서 평가한 결과에 따라 행안부에서 시 · 군 · 구에 직접 교부

참고 | 예산절감에 대한 오해, 질의회신 사례

1. 예산절감과 긴축재정의 차이

- 예산절감은, 재정운용 전반에 걸쳐 불필요한 일을 없애거나 낭비요소를 찾아내고 제도개선이나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통해 과다하게 투입되는 예산을 아껴서 사용하자는 것임
  - 절감한 예산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국민이 꼭 필요한 곳에 재투자함으로써 더 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
  - 따라서, 예산절감을 통해 국민에 대한 복지 등 행정서비스의 질의 저하를 가져오는 것은 절감의 취지에 맞지 않음

- 긴축재정이란 경기가 과열할 가능성이 있거나 세입세출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 증세 등에 의한 세입확충조치를 취하지 않고 경비의 절감 등에 의해 세출규모를 축소하는 재정운용 정책이며
  - 국민경제를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, 기존의 국민서비스에 대한 저하를 가져올 수 있음

2. 예산절감 10% 라는 수치가 나오게 된 근거

- 10% 라는 수치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*, 국가예산절감 계획**등을 기준으로 하여

  * '섬기는 정부' 국정지표 추진을 위해 절약하면서도 일 잘하는 실용정부를 구현하고자 '예산10% 절감'을 국정과제(핵심)로 채택

  ** 기획재정부에서는 국가예산 10% 절감목표를 수립하여 추진

- 지방자치단체의 수용성, 실천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한 상징적인 목표임

3. 지방예산 10% 절감계획을 2개년도('08~'09)에 걸쳐 추진하는 이유

- 예산절감 10% 의미는, '08년에 이미 편성된 지방예산의 약 10%(125조 중 약 12.3조)를 예산절감의 지향점으로 삼아 12.3조를 전체적인 목표치로 제시한 것으로서
  - '08년에 집행과정(5.1조)과 '09년 예산편성과정(7.2조)으로 나누어 절감을 추진하고 있음
  - 따라서 12.3조는 전체적으로 지향해야 할 상징적인 목표일 뿐이고, 모든 자치단체가 달성해야 할 획일적인 기준은 아님

- 국가의 경우도 2개년도에 걸쳐서 절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('08년 집행과정 2.5조 절감, '09년 편성과정 17.5조 절감)

4. 10% 라는 수치는 모든 자치단체가 달성해야 하는 일률적인 기준인지

- 10% 라는 수치는 전국의 자치단체가 모든 사업과 예산에서 일률적으로 10%씩 절감해야 하는 기준이 아님

- 자치단체별 절감 목표와 계획은 지역별 특성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

  * 참고로, '08년에 서울 등 12개 시·도가 10~13%, 4개 시·도는 6~9% 수준으로 절감 계획을 수립함

5. 예산을 절감하면 기존 사업의 경비가 조정되는 것인 만큼 국민에 대한 서비스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

- 모든 사업을 원점(zero-base)에서 재검토 한다고, 종전 사업비를 무조건 삭감함으로써 기존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은 절감의 취지에 맞지 않음

- 예산을 편성 · 집행하는 과정에서 낭비요소가 없는지 한번더 면밀히 살펴보고 최대한 아껴쓰자는 것임

6. 예산절감은 자치단체가 매년 추진해야 하는 것인지

- 예산절감은 절감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, 예산을 편성 · 집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낭비요소를 없애고 국민이 꼭 필요한 부분으로 전환하여 더 큰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임

- 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절감을 하였다 하더라도 집행과정에서는 신기술 · 신공법 적용, 계약방식의 변경, 제도개선 등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 지속적으로 절감은 가능함

- 예산절감은 일선 공무원들의 관례답습적인 예산사용 관행과 마인드를 바꾸고, 이를 통해, 국민세금을 알뜰하게 쓰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큰 목적인 만큼 단기간에 끝날 사안은 아니며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

- 다만, 매년 절감의 목표, 범위, 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자치단체가 자율성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다고 봄